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85호

2018. 9. 10.

건명	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안(소득기술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8. 8. 28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8. 28.

## 보 고 내 용

### □ 제안이유

- 논산딸기축제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(안 제2조)

- 논산딸기축제행사 추진계획 입안, 홍보, 운영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중점기능으로 함

나.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(안 제3조)

-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시장이 위촉함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

다.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회의(안 제7조)

-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

라.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기획단 운영(안 제9조)

- 시장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

### □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